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견 심사보고서

2003. 4. 10.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4월 2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4월 2일
- 다. 상정일자 : 제9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03. 4. 1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황 등 연

가. 제안이유

최근 우리구 관내 재개발 사업완료에 따른 한 개의 아파트 단지가 2개 동으로 구분되어 생활권, 경제권 등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이 있어 행정구역 조정 필요.

나. 주요골자

- 마포구 아현동(아현제1동) 2필지를 공덕동(공덕제1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 마포구 대흥동 1필지를 용강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다. 입안내용

-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

구분	변경명 (행정동)	현황								
		면적 (㎡)	세대 (세대)	인구 (인구)	인구 밀도 (인/㎡)	세대 밀도 (세대/㎡)	인구 밀도 (인/㎡)	세대 밀도 (세대/㎡)	인구 밀도 (인/㎡)	세대 밀도 (세대/㎡)
편입되 는 지역	아현동 (아현제1동)	0.34	5,619	14,563	-0.0074991			0.3325009	5,619	14,563
편입받 는 지역	공덕동 (공덕제1동)	0.31	4,892	12,991	+0.0074991			0.3174991	4,892	12,991
편입되 는 지역	대흥동 (대흥동)	0.54	6,070	16,309	-0.0018088			0.5381912	6,070	16,309
편입받 는 지역	용강동 (용강동)	0.66	3,928	10,102	+0.0018088			0.6618088	3,928	10,102

※ 면적, 세대, 인구수는 행정동 기준임

○ 발생원인

- 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 용강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1개의 아파트 단지가 2개의 법정동(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생활권, 경제권이 불일치된 행정구역 조정필요

○ 경계조정 정비기준

- 1개의 단지가 2개동에 걸치지 않게 조정
- 재개발사업구역내 관할구역 면적이 작은 동을 큰 지역 관할동으로 편입하여 동별 행정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현재의 도로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동경계를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물은 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용강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동(법정동)이 불일치하여 같은 아파트단지내에서 2개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1개동으로 편입·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고자 행정자치부령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서울시장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임.

○ 현재의 도로망과 아파트 외벽 및 외곽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려는 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은 아현동 400번지상 대지 6,338.8㎡(약 1,921坪)와 아현동 401번지상 대지 1,160.3㎡(약 352坪)를 공덕제1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 용강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은 대흥동 745번지상 대지 1,808.8㎡(약 548坪)를 용강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불편해소와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내용과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건물은 사전에 해당 조합원 및 해당 동 출신 구의원의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재개발사업 없이 현재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몇 개동이 있나?

○ 답변요지(황동연 주민자치과장) : 4개 동임.

○ 질의요지(오윤수 위원) : 주민편익을 위한 동 경계 재조정 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 답변요지(조성대 행정관리국장) : 불합리한 곳을 파악하 고, 경계조정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할 것임.

○ 질의요지(남두희 위원) : 동 경계조정 후 지번 변경이 안 되는 이유와 용산구와의 경계 조정은?

○ 답변요지(조성대 행정관리국장) : 행정동 경계조정과 달리 법정동 변경 및 구 경계조정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자생단 체 등의 의견청취도 하여야 주민대표성이 있지 않은가?

○ 답변요지(황동연 주민자치과장) : 일반적인 경계조정의 경 우에는 주민 50%이상 찬성시 시행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채택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洞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3. 4.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건 명 : 아현동일부⇒공덕동, 대흥동일부⇒용강동 행정구역 변경

2. 상정사유

- 최근 우리구 관내 재개발 사업완료에 따른 한 개의 아파트 단지가 2개동으로 구분되어 생활권, 경제권 등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이 있어 행정구역 조정필요

3. 주요요지

- 마포구 아현동(아현제1동) 2필지를 공덕동(공덕제1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 마포구 대흥동 1필지를 용강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9·8·31>

-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제2조

나. 주요추진사항

-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계획 수립(2003. 2. 20)
-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서울시 사전협의 신청(2003. 3. 26)

불합리한 행정구역 현황

▣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

구분	법정동 (행정동)	현 행			조 정			조 정 후		
		면적(k㎡)	세대	인구(명)	면적(k㎡)	세대	인구(명)	면적(k㎡)	세대	인구(명)
편입되는 지 역	아현동 (아현제1동)	0.34	5,619	14,563	-0.0074991			0.3325009	5,619	14,563
편입받는 지 역	공덕동 (공덕제1동)	0.31	4,892	12,991	+0.0074991			0.3174991	4,892	12,991
편입되는 지 역	대흥동 (대흥동)	0.54	6,070	16,309	-0.0018088			0.5381912	6,070	16,309
편입받는 지 역	용강동 (용강동)	0.66	3,928	10,102	+0.0018088			0.6618088	3,928	10,102

※ 면적, 세대, 인구수는 행정동 기준임

▣ 발생원인

- 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 용강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한 개의 아파트 단지가 2개의 법정동(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생활권, 경제권이 불일치된 행정구역 조정필요

▣ 경계조정 정비기준

- 1개의 단지가 2개동에 걸쳐지 않게 조정
- 재개발사업구역내 관할구역 면적이 작은동을 큰 지역 관할동으로 편입하여 동별 행정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현재의 도로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동경계를 조정

▣ 검토의견

- 전체 사업시행구역의 20%정도 되는 아현동(아현제1동)일부를 공덕동(공덕제1동)으로 편입하고, 확정측량완료에 따라 아파트 외벽 및 외곽도로를 기준으로 경계조정
- 대흥동 일부를 용강동으로 편입하고 아파트외벽 및 외곽도로를 기준으로 경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 : 행정구역변경대상 현황도 2부.

불합리한 행정구역 필지별 조서

1. 아현동, 공덕동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

편입되는지역 아현동 2필지 7,499.1m ²	⇒	편입받는지역 공덕동 2필지 7,499.1m ²
---	---	---

필지별 조서

법정동명	지 번	지 목	지 적(m ²)	비 고
아현동	400	대	6338.8	
아현동	401	대	1160.3	

※ 지적확정측량 성과도에 의거 작성

2. 용강동, 대흥동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

편입되는지역 대흥동 1필지 1,808.8m ²	⇒	편입받는지역 용강동 1필지 1,808.8m ²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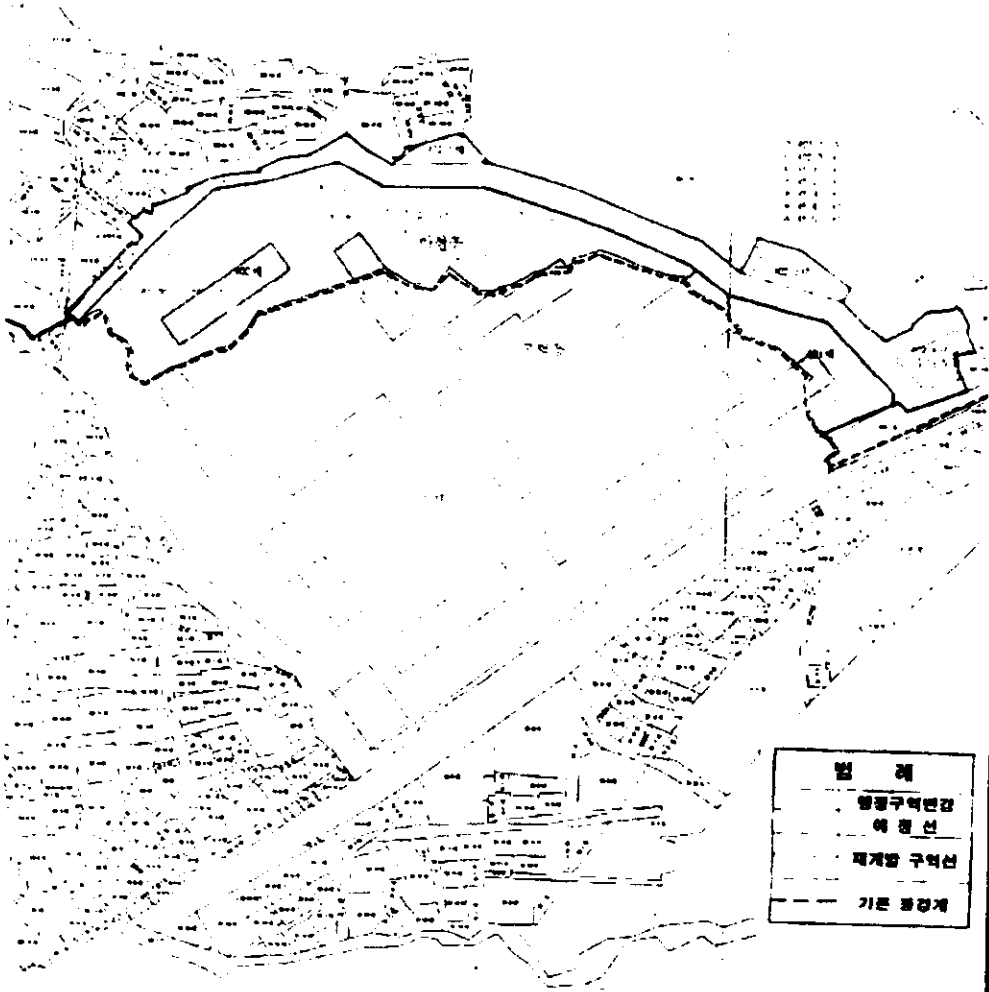
필지별 조서

법정동명	지 번	지 목	지 적(m ²)	비 고
대흥동	745	대	1,808.8	

※ 지적확정측량 성과도에 의거 작성

행정구역 변경대상 현황도

변경전 : 마포구 아현동 → 변경후 : 마포구 공덕동



행정구역 변경대상 현황도

변경전 : 마포구 대흥동 → 변경후 : 마포구 용감동

